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·군사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·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